

경운대학교 부전공이수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부전공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 부전공 이수라 함은 소속된 학부(과) 전공 이외의 타 학부(과)에서 소정의 전공과목을 일정 수 이상 체계적으로 이수함을 말한다.

제3조(이수신청 및 선택범위) ① 부전공을 이수중인 자는 졸업예정학기말 소정의 기간을 이용하여 부전공학위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보건·간호 계열은 인원 및 학습제에 따라 부전공을 제한한다.

제4조(이수) ①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부전공학부(과)의 전공과목(2~4학년 과정) 21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.

② 부전공학부(과)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주전공학부(과)에서의 교과목과 동일할 때는 부전공학부(과)의 교과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

③ 부전공 학위를 위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더라도 제1전공 및 부전공 전체에 대한 성적 평균이 평점 2.5이상 이 되지 아니할 경우 부전공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한다.

제5조(이수학점 및 이수의 인정) ① 부전공으로 이수한 학점은 일반선택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.

② 부전공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졸업증서와 학적부에 이를 표시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